개인정보보호!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검역본부

수신 한국동물약품협회(동물용의약품 제조·수입업체)
(경유)
제목 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 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

1. 관련:
   가. 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 부칙 (제2020-90호, '20.11.12.)
   나.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6897('22.10.07.)호

2. 위와 관련, 개정 고시가 시행('22.11.13.)됨에 따라,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제조·수입업체는 아래와 같이 제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"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" 표시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   □ (대상 성분) **제2조제1호다목의 항생항균제** 및 **2호나목의 생물학적제제**(붙임)
   □ (표시 적용) 개정 고시 **시행일('22.11.13.) 이후 제조·수입(통관)된 제품**
   □ (위반 시 행정처분) 규칙 [별표 3] Ⅱ. 개별기준 제48호
   ○ (1차) 경고 (2차)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(3차)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

3. 아울러,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제조(수입)업체에 "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" 표시 준수 등을 지도·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대상품목 세부내역 1부. 끝.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주무관	**전지은**	사무관	**김돈환**	동물약품관리과장	전결 2022.11.7. **이연섭**

협조자

시행 동물약품관리과-13451 (2022. 11. 7.) 접수

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, (농림축산검역본부) 동물약품관리과 (율곡동) / http://www.qia.go.kr

전화번호 054-912-0532 팩스번호 054-912-0530 / zest20@korea.kr / 대국민 공개